

2016년 「해남군 자체감사 계획」 관련

## 땅끝모노레일 정기감사 결과

- 감사기간: 2016. 2. 17. ~ 2. 19.(3일간)
- 대상기간: 2015. 1. 1. ~ 2015. 12. 31.
- 감사요원: 감사담당외 2명
- 지적사항: 9건 (확인서 징구)
  - 행정상 조치: 9건(시정4, 주의4, 통보1)



해 남 군  
[감사담당관실]

## I

## 지적사항 목록

연번	제 목	행정상조치			재정상조치		비 고
		시정	주의	통보	방법	금액(원)	
계	9건	4	4	1		-	
1	모노레일 및 카 수리·정비대장 미관리	○					
2	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	○					
3	땅끝모노레일 위·수탁 계약체결 내용 미흡 및 미이행	○					
4	운영사업단 해남군 추천 직원(팀장) 역할 재검토			○			
5	직원 출근부 관리 소홀		○				
6	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 미구비		○				
7	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소홀	○					
8	궤도시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 소홀		○				
9	아르바이트 대금 지급 부적정		○				

##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### 1. 모노레일 및 카 수리·정비대장 미관리

#### 가. 2015년 모노레일 및 카 수리비 집행현황

(단위: 천원)

월 일	수리, 정비내용	채 주	금 액	비 고
3. 10.	레일용접	○○○ 외1	800	
3. 17.	모노레일 수리	☆☆모노레일	1,702	
5. 20.	카 도어수리	"	550	
6. 30.	카 전자브레이크 점검	"	495	
7. 30.	카 배터리 교체 및 점검	"	2,926	
8. 20.	철계단 도색	"	1,430	
9. 30.	카 모터수리 등	"	1,980	
계	7 회		9,883	

#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(주)땅끝모노레일이 (주)☆☆모노레일로부터 운영사업권을 양도·양수하고 해남군의 동의를 받은 시점(2006. 4. 18.)에서 해남군과 (주)땅끝모노레일간 공동투자협약서 및 운영계획 협약서를 재작성 하였어야 함은 물론
- 해남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, 모노레일카는 향후 교체시기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리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
- 모노레일카(20인승, 2대), 주행레일(395m) 등 중요시설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수리·정비를 하면서도 기록유지를 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.

#### 다. 처분요구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모노레일 교체시기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및 모노레일카 수리·정비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## 2. 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저정

### 가. 현 황

#### 1) 2016년 퇴직금 예산편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근무자	계	대표 ○○○	소장 ○○○	부장 ○○○	과장 ○○○	대리 ○○○	주임 ○○○
퇴직금	13,033	2,896	3,712	2,716	2,493	1,216	-

#### 2) 2016년 1월 퇴직금 지급현황

- 기존 근무자 대표 ○○○ 등 5명은 예산에 편성된 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개월분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
- 2015. 11월 신규 채용된 주임 ○○○은 근무기간 1년 미만을 이유로 예산 미편성 및 퇴직금 미지급 하고 있음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(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)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.
-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(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)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“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(1호~7호)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② 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따라서, 땅끝모노레일 근무자(6명)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가입 조치하여 퇴직연금으로 적립, 관리하여야 함에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은 부적정하다.

### 다. 처분요구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직원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으로 적립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땅끝모노레일 위·수탁 계약체결 내용 미흡 및 미이행

#### 가. 현 황

- 땅끝모노레일 위·수탁 계약체결(2013.6.27.)
  - 위 탁 자 : 해남군수 박 철 환
  - 수 탁 자 : (주)땅끝모노레일 대표이사 ○ ○ ○
  - 위·수탁기간 : 2013. 6. 27. ~ 2016. 6. 26. (3년)
- 위탁재산
  - <건 물>
    - 하부역사 : 송지면 ☆☆☆리 산○○번지 1동 350.7㎡
    - 상부역사 : 송지면 ☆☆☆리 ○○○○-○번지 1동  
350.7㎡ 중 하차장 일부
  - <시설물> : ☆☆☆리 산○○, 산○○, 산○○-○, 산○○-○, ○○○○-○
    - 주행레일 395m 및 부대시설, 운행차량(20인승) 2대
    -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일체

#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땅끝모노레일 위·수탁 계약서의 위탁재산 표기시 건축물 용도별 현황, 장비 목록 등 세부사항을 미표기하여 위탁재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
- 계약서 제11조(운영협약) 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모노레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갑(해남군수)과 을(땅끝모노레일 대표이사)간 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.

#### 다. 처분요구

- 위·수탁계약서에는 해남군수가 (주)땅끝모노레일 대표이사에게 위탁한 재산의 세부사항을 표기하여 명확히 하시고,
- 계약서 제11조에 의거 해남군수와 (주)땅끝모노레일 대표이사간 미체결된 운영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

## 4. 운영사업단 해남군 추천 직원(팀장) 역할 재검토

### 가. 땅끝모노레일 담당업무 현황

직 위	성 명	부서명	담당업무	비 고
대표이사	○ ○ ○	땅끝모노레일	대외업무	
소 장	○ ○ ○	관 리 과	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	
부 장	○ ○ ○	운 행 과	모노레일 관리 및 운행	
과 장	○ ○ ○	운 행 과	"	
주 임	○ ○ ○	경 리 과	경리 및 대표업무	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공동투자 협약서 제4조(공동투자) (2)공동투자의 비율은 50대 50으로 한다. 제6조(운영사업) (3)“갑”과 “을”은 운영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. 제9조(운영비 지출) (3)운영비 지출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합의하여 구성된 사업단으로 하여금 경리하게 한다.
- 운영계획 협약서 다. 운영업체 구성 및 운영(구성원) 해남군과 ☆☆모노레일(주)에서 직원(팀장) 1명씩 추천한다.
- 모노레일카를 운영하는 업체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.
  - 이용료 수금 및 정산, 예산수립 및 집행
  - 일일정산 보고 및 결산보고 (배당금 송금)
  - 시설물 유지관리, 안전관리
  - 기타 시설물 관리 관련업무로 규정되어 있다.
- 해남군 추천 직원(○○○)은 모노레일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역할을 하여야 하나, 단순업무인 모노레일 운행업무만 수행함은 공동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음

### 3. 처분요구

- 운영계획협약서에 의거 해남군에서 추천한 직원(○○○)이 모노레일 운행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남군 추천 직원의 역할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## 5. 직원 출근부 관리 소홀

### 가. 현황

- 출근부에 의거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관리
- 출근일수, 시간외 근무시간, 휴일근무일수, 연가일수 등을 관리하여 월급여 및 수당 지급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위해 직원별 출근부를 관리하고 있고 매일 출근시간, 퇴근시간을 기재하고,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, 출근부에는 출근일수, 연장근무일수, 연가일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이 마련되어 있어,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계약직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음.
- 그러나, 출근부에 출퇴근 시간 및 서명, 출근일수, 시간외근무시간, 휴일근무일수, 연가일수 등을 기록관리 하지 않아 급여 지급의 정확한 산출근거로 활용하지 못하고, 월급여를 연간 총인건비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 근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### 다. 처분요구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출퇴근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 직원들의 급여,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 미구비

### 가. 숙직비 지급 현황

지급대상자			지급 일수	1일 지급액(원)	총지급 액(원)	지급방법	비고
소속	직위	성명					
(주)땅끝모노레일	★★	○○○	20	30,000	600,000	계좌이체	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세출예산 성질별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의하면 일숙직비는 1일당 50,000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,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일숙직(재택포함)은 당직근무명령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고, 당직근무일지, 보안점검부를 구비하여 이상 유무 등을 작성관리 하여야 함에도,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모노레일사무실 근처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는 ○○○★★에게 수당집행증빙서류 없이 매월 600,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### 다. 처분요구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당직명령에 의거 당직근무일지, 보안점검부 등을 작성관리하시고,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 7.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소홀

### 가. 현 황

건물소재지	건축면적 (㎡)	개인하수처리시설			비고
		처리방법	용량	관리자	
송지면 ☆☆☆☆길 ○○-○○	350.7	현수미생물 접촉방법	40㎡	(주)땅끝모노레일 대표이사 ○○○	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「땅끝 모노레일 위·수탁 계약서」 제3조 2항에 의하면 (주)땅끝모노레일<sup>1)</sup>은 수탁재산<sup>2)</sup>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져야하며
- 「하수도법」 제39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)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음.

### 다. 처분요구

- 오수처리시설 내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1) 공동투자협약(2004.11.24.)시 해남군과 ☆☆모노레일(주)이 협의하여 선정한 운영업체로 2015. 12. 1.자로 대표이사 변경 (당초 한동인, 변경 이창식)

2) 하부역사(송지면 송호리 산45번지 내 건축면적 350.7㎡) 및 상부역사

## 8. 궤도시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 소홀

### 가. 현 황

정기점검일자	점 검 자	보고여부	비고
2015. 3. 4. ~ 3. 5.	○○○○공단		위탁점검
2015. 6. 1.	○ ○ ○	미보고	자체점검
2015. 9. 7.	○ ○ ○	미보고	자체점검
2015. 12. 1.	○ ○ ○	미보고	자체점검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「궤도운송법 시행령」 제17조(자체 안전관리) 제1항에 의하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매일 궤도시설을 운영하기 전 시험운전 및 시설을 점검, 그 기록을 1년간 보존 하여야 하며, 정기점검은 3개월 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는 6개월마다 시장·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서류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팩스<sup>3)</sup> 로 송부한 사실이 있음.

### 다. 처분요구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, 보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3) 보고일은 알 수 없으나 해남군 환경교통과의 팩스(530-5585)로 보냈다고 주장

## 9. 아르바이트 대금 지급 부적정

### 가. 현 황

성 명	기 간	일수	단가	금액	수취인	비고
○ ○ ○	‘15.5.2.~5.5.	4	50,000	200,000	◇◇◇	
○ ○ ○	‘15.7.10.~8.16.	20	50,000	1,000,000	◇◇◇	
○ ○ ○	‘15.8.1.~8.5.	5	50,000	250,000	◇◇◇	

### 나. 위법부당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1조(지급명령의 제한)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어린이날 연휴 및 하계 휴가기간중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채주의 계좌가 없다는 사유로 채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제3자<sup>4)</sup>에게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.

### 다. 처분요구

- (주)땅끝모노레일에서는 채권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시고,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4) 채주의 부모로 땅끝모노레일 관계자는 본인 입회하에 부모님과 직접 통화후 입금하였다고 주장